

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(제30조의2제3항 관련)

구분	교육훈련의 내용	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	교육훈련 유효기간
1. 신규자 교육훈련	· 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· 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·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·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·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	· 강의 및 실습 · 12시간 이상	
2. 재직자 교육훈련	· 안전 복장에 관한 사항 · 장비와 도구의 안전에 관한 사항 · 화물별 위험에 관한 사항 · 화물별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·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·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·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	· 강의 및 실습 · 2시간 이상	2년

비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신규자 교육훈련 또는 제2호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.